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2102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유한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304.29m² (1창고)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0. 1.부터 위 제1의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4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'변경된 청구원인'란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전호재

별지